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소상공인 포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5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997년 국내 유통산업의 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대규모 점포가 대거 진출해 중소기업업을 위협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등을 협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 3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중소기업체를 대표할 뿐 그 외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일부 중소기업체만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 내 입주업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의회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중소기업 대표 3인 중 2인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고 지역상권의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 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 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u>지역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 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 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 ----- ----- <u>지역중 소유통기업, 지역소상공인 및 지역-</u> ----- ----- ----- -----.
<신 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u>포함한 11명 이하의 협의회 위원으 로 구성한다.</u>
<신 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시 ·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 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② <u>협의회</u>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u>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u> 2. <u>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 경우 2명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u>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u> <u>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 또는 지역상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u> <u>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 또는 지역상권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 4. <u>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u> ④ <u>그 밖에 협의회</u>의----- ----- -----.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 규정을 두어, 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총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협의회 위원은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중소유통기업의 3명,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고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③ ~⑤ (생략)

그러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 3인은 중소기업체를 대표할 뿐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고,

협의체의 역할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라 영향이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것이므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규모별·형태별 다양한 지역의 중소기업인이 협의회 운영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협의회 위원을 소상공인 2인과 지역상권의 전문가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구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협의회가 국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닌 지역 유통업 상생발전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유통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 바람직하고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규모 및 형태가 다양하므로 중소유통기업 대표 3인 중 2인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므로,

지역별 유통환경에 맞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1